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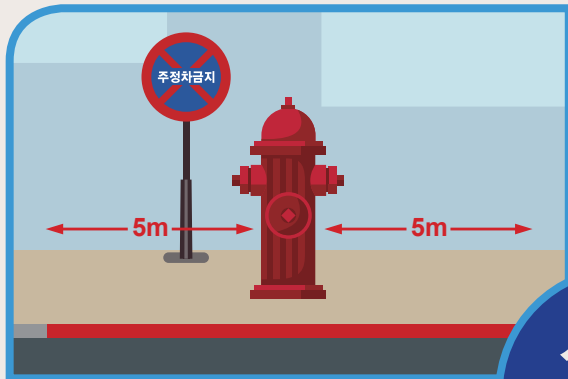
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**꼭** 비워주세요!

불법 주·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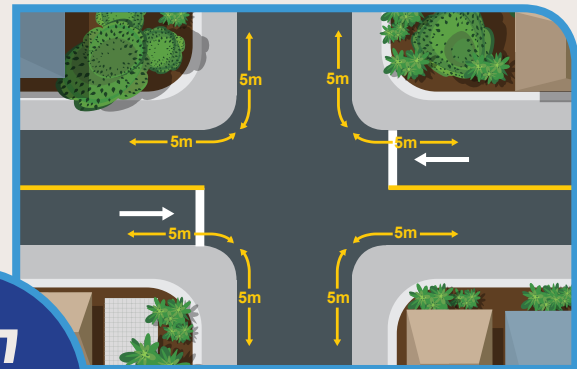
소방시설 주변

주·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
정지 상태 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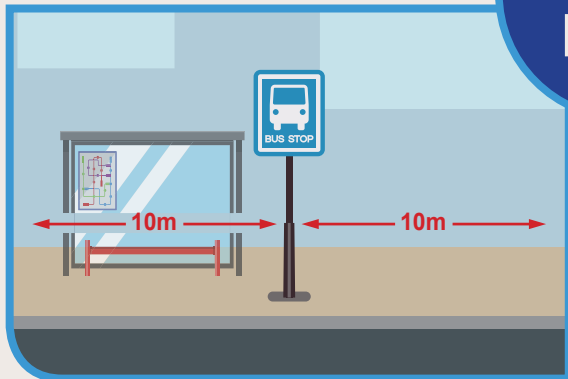


교차로 모퉁이

주·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
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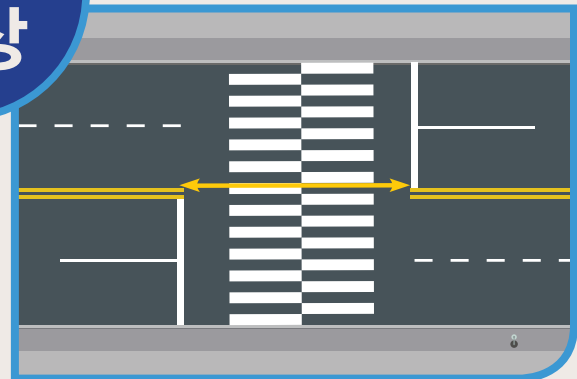


**신고
대상**



버스정류소

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
정지 상태 차량



횡단보도

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

- **신고방법**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
- **신고(접수) 요건**
 - ▶ 사진자료 첨부
 -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
 -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 - ▶ 신고기한 :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2일 이내
- **과태료 부과** :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



행정안전부

인천시 서구